소통과 신뢰로 하나되는 창원특례시의회

제155회 창원시의회 (제1차 정례회)
제7차 기획행정위원회(2026.9.28.)

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
(기획행정위원회)

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 28.(월)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 출 일: 2026. 8. 24.

나. 제 출 자: 창원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. 8. 27. (의안번호 제50호)

라. 상정 및 의결: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(2026.9.28.)

2. 제안설명 요지 (김종필 기획조정실장)

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되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종이수입증지의 사용 규정을 삭제하고, 전자수입증지의 사용, 규격 및 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3. 주요 내용

가. 수입증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인증기 · 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되는 '전자수입증지'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.(안 제2조)

나. 전자수입증지의 납부 방법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 등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.(안 제3조)

다. 전자수입증지 사용 시 표시되어야 할 사항과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을 정함.(안 제4조 및 제5조)

라. 인증기등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, 소속 공무원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.(안 제6조)

마.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납부 수단별 시 금고 입금 기한을 정함.(안 제7조)

바. 종이수입증지의 효력 상실 및 폐기, 종이수입증지 소유자에 대한 환매 절차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둠.(안 부칙 제2조)

사.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(안 부칙 제3조)

4. 참고 사항

○ 관계 법령 등 (안건책자 참조)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정이)

□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현재 운영 중인 전자수입증지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, 관련 제도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**【안 제2조(정의)】** 전자수입증지의 개념(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)을 신설하고 인증기·발급기·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발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.

○ **【안 제3조(납부 방법)】** 현금 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지급수단(계좌이체, 전자화폐, 신용카드 등)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**【안 제4조(표시) 및 제5조(규격)】** 전자수입증지의 표시사항(요금·발행기관·발행일·고유번호) 및 규격 기준(가로 2.7cm 이내, 세로 3cm 이내)을 마련함.

○ **【안 제6조(관리체계)】** 인증기 등의 사용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, 소속 공무원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, 인증기 등의 설치 · 교체 또는 폐기 시 고시하도록 규정함.

○ **【안 제7조(수입금 관리)】** 매일 결산을 원칙으로 하고, 현금은 납부 다음 날까지, 전자지급수단은 카드사 입금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도록 명확히 함.

○ **【안 부칙 제2조(경과조치)】** 조례 시행일에 기존 종이수입증지의 효력을 상실시키고, 이에 따른 환매 및 폐기, 종이수입증지 판매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**【안 부칙 제3조(다른 조례 정비)】** 관련 조례인 「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 및 「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」의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삭제함.

□ 종합 의견

○ 2011년 11월 행정안전부는 횡령 등 부패 수단으로의 악용, 민원인 불편, 제조비용 및 수수료 등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를 추진하였음.

○ 이에 창원시도 2012년부터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사용을 중단하고, 민원수수료를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영(印影) 또는 전자화된 이미지 형태로 발급하고 있음.



종이증지



전자수입증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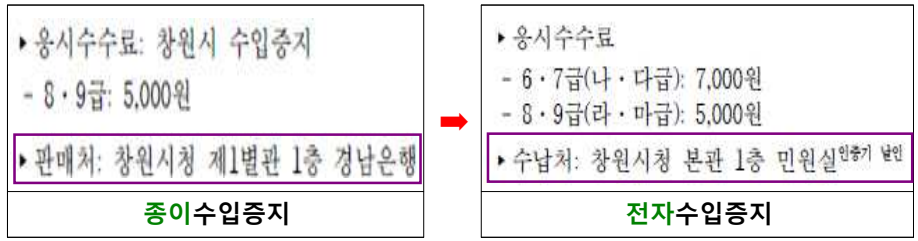
○ 다만, 기존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 중 일부가 현재까지 남아 있어, 현재 총 1,526,043매를 제1금고인 경남은행 시청지점 및 5개 구청지점에서 보관 및 판매하고 있음.

【종이수입증지 보유 현황】

연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**2026년 현재**
매수	1,528,368	1,527,481 (△887)	1,526,786 (△695)	1,526,229 (△557)	**1,526,043** (△186)

○ 기존 종이수입증지는 창원시 및 창원시의회에서 채용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(임기제공무원) 응시수수료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, 2026년 6월부터 인증기 날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는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.

【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】



○ 종합적으로 볼 때, 종이수입증지는 2012년부터 발행 및 사용이 중단되어 현재는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음. 따라서 현행 조례를 운영 중인 전자수입증지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,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상당량의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, 조례 시행에 따른 환매·폐기 및 판매계약 해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6. **질의 · 답변 요지**: 기재 생략

7. **토론 요지**: 기재 생략

8. **심사 결과**: **원안 가결**

9. **소수의견 요지**: 없음

10. **기타 필요한 사항**(부대의견, 건의 사항, 촉구사항 등): 없음